

고 소 장

고소인 0 0 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전화번호: ○○○ - ○○○○)

주민등록번호 : 111111 - 1111111

피고소인 △ △ △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○○빌딩 ○○호

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

고소취지

위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고소인은 20〇〇. 〇. 초순부터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소재 〇〇빌딩 ○층 점포 약 30㎡를 (보증금 1,000만원, 월차임 150만원, 임차기간 2년) 임차하여, '〇〇〇'라는 상호로 숙녀복 정장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, 영업부진으로 20〇〇. ○월부터 ○개월간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는바, 피고소인은 20〇〇. 〇. 오후 ○시경 술을 마시고 가게에 찾아와 차임을 내어놓으라며 고래고래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던 여자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였고, 그 이후에도 3차례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고소인에게 욕을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.

이에 고소인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법이 적용하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.



2000년 0월 0일 위 고 소 인 0 0 0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록MM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314조
범죄성립 요 건	·허위의 사실을 유포,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·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 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		
형 량	・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・근거: 검찰청법 10조 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(재정신청) 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 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헌법소원) 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 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(단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24조(고소의 제한)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)